

---

#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안내서

(Guidebook to Foreign Investment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

2012. 12.



금융투자감독국  
증권시장팀

# 목 차

## I. 외국인 투자제도 개관

- 1. 외국인 투자제도의 의의 ..... 1
- 2. 외국인의 정의 ..... 4
- 3. 외국인 투자 현황 ..... 5

## II. 외국인의 상장주식 취득한도제도

- 1. 취득한도 ..... 6
- 2. 취득한도 초과에의 예외적 허용 ..... 9
- 3. 취득한도의 계산 기준 ..... 11
- 4. 위반 시 조치 ..... 12

## III.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 1. 투자등록 대상 ..... 13
- 2. 외국인 투자등록 현황 ..... 14
- 3. 투자등록 절차 ..... 16
- 4. 투자등록의 특례 ..... 22
- 5. 위반 시 조치 ..... 25

## IV.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제도

- 1. 장내거래 의무화 및 장외거래의 예외적 허용 ..... 26
- 2. 장외거래 신고 ..... 29
- 3. 투자자집단의 증권거래 등 ..... 35
- 4. 보고사항 ..... 38
- 5. 위반 시 조치 ..... 40

## 별첨 1.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시 참고사항

- 1.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 절차 ..... 41
- 2.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 절차 ..... 42
- 3.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 ..... 44
- 4.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취득 관련 신고 ..... 46

## 별첨 2. 외국인 투자제도 관련 법규 및 서식

- 1. 자본시장법 ..... 49
- 2. 자본시장법시행령 ..... 49
- 3. 금융투자업규정 ..... 50
- 4.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 62

## I. 외국인 투자제도 개관

### 1 외국인 투자제도의 의의

주요 선진 국가들은 자국의 기간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자본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엑스-플로리어 규정(Exon-Florio provision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연방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 등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는 주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도 산업법(Industry Act of 1975, 영국), 공정무역법(Fair Trading Act of 1973, 영국), 화폐재정법(Financial and Monetary Code, 프랑스), 외환 및 외국무역법(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Control Law, 일본), 외국인투자심사법(Foreign Investment Review Act of 1973, 캐나다) 등을 통해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sup>1)</sup>,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에서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일부 상장법인에 대해 외국인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의 외국인 투자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한국은 자본시장 국제화의 일환으로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외국인의 전체 한도 및 외국인 1인 한도를 설정하였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 시장을 통해서만 상장증권을 매매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의 투자등록 및 투자한도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였다. 이후 자본시장 개방의 단계적 추진을 위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제정, 2009.2.4. 시행)의 약칭을 “자본시장법”으로 통일·사용하고, 자본시장법의 영문 제명에 대해서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로 하고, 그 약칭을 “FSCMA”로 통일·사용하고 있다.

해 외국인 투자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1998년 5월에는 공공적 법인 등을 제외한 상장법인 주식 취득한도를 폐지하였다.

<표 I-1> 외국인의 증권투자 개방 연혁

연 혁	개방 내용
1981년	▪ 투자신탁회사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발행 허용
1984.7월	▪ 외국투자전용회사에 의한 국내증권매매를 위해 Korea Fund 설립
1987.3월	▪ Korea Europe Fund 설립
1990.7월	▪ Korea Asia Fund 설립
1992년	▪ 국내 주식시장 개방 *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인거주자 및 국민인 비거주자는 개별 법령에서 금하지 않는 한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
1994년	▪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상장 전환사채 및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국공채 등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의 채권투자 허용(채권시장 개방)
1996년	▪ 비거주자의 국내 주가지수선물거래 허용 ▪ 외국인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 확대
1996.10월	▪ Korea Bond Fund 설립
1997.6월	▪ 대기업 무보증CB 투자허용 등
1997.7월	▪ 주가지수 선물한도 확대 및 옵션투자 허용(전체한도100%, 개인한도 5%)
1997.11월	▪ 외국인의 장외등록주식(KOSDAQ) 투자 허용
1997.12월	▪ 외국인의 모든 종류의 채권투자에 대한 한도 폐지
1998.2월	▪ 기업어음(CP) 투자허용
1998.5월	▪ 일부 공공법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폐지 ▪ RP거래 및 상장채권의 장외거래 허용 ▪ 주식형 수익증권의 투자한도 폐지 및 기타 수익증권 투자허용 ▪ 주가지수 선물·옵션투자한도 폐지
1998.7월	▪ 비상장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 허용

<표 I-2> 한국의 주식시장 개방 추이

확대일자	'92.1.3 개방	'94. 12.1	'95. 7.1	'96. 4.1	'96. 10.1	'97. 5.2	'97. 11.3	'97. 12.11	'97. 12.30	'98. 5.25	'00. 11.15	
유가증권	○전체 한도 ·일반법인	10%	12%	15%	18%	20%	23%	26%	50%	55%	폐지	
	·공공법인	8%	⇒	10%	12%	15%	18%	21%	25%	⇒	30%	40%
	○1인 한도 ·일반법인	3%	⇒	⇒	4%	5%	6%	7%	50%	⇒	폐지	
	·공공법인	1%	⇒	⇒	⇒	⇒	⇒	⇒	⇒	⇒	3%	3%
코스닥	○전체 한도				10% (’96.9월)	⇒	⇒	15% (’97.12.1)	55% (’98.4.1)		폐지	
	○1인 한도				3% (’96.9월)	⇒	⇒	5% (’97.12.1)	50% (’98.4.1)		폐지	

<표 I-3> 한국의 채권시장 개방 추이

구분		'94.7.1	'97.1.3	'97.6.2	'97.11.17	'97.12.12	'97.12.23	'97.12.30	'98.5.25	'98.7.1
중소기업	일반	×	×	전체 50%	⇒	한도 폐지				
	CB	전체 30% (1인 5%)	전체 50% (1인 10%)	⇒	⇒	한도 폐지				
회사채	BW EB	×	×	×	전체 50% (1인 10%)	한도 폐지				
	보증 -	×	×	×	×	전체 30% (1인 10%)	전체 30%	한도 폐지		
대기업	일반	×	×	×	×	전체 30% (1인 10%)	전체 30%	한도 폐지		
	CB	×	×	전체 30% (1인 6%)	⇒	전체 50% (1인 10%)	전체 50%	한도 폐지		
	BW EB	×	×	×	×	전체 50% (1인 10%)	전체 50%	한도 폐지		
	보증 -	×	×	×	×	전체 30% (1인 10%)	전체 30%	한도 폐지		
국공채, 특수채		×	×	×	×	×	전체 30%	한도 폐지		
상장채권 장외거래		×	×	×	×	×	×	×	투자 허용	
RP 거래		×	×	×	×	×	×	×	투자 허용	
비상장채권		×	×	×	×	×	×	×	×	투자 허용

이와 같은 자본시장법상의 외국인 투자제도는 크게 외국인의 상장주식 취득한도, 외국인의 투자등록 및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외국인의 상장주식 취득한도제도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중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적 법인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두는 제도이다.

### ② 외국인의 투자등록제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계산주체 명의로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외국인은 직접(또는 대리인을 통해)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을

신청하여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이를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제시하여야 상장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등록증은 신청 후 4시간 이내에 발급되며, 증권회사의 외국인 위탁계좌 개설 및 외국환은행의 증권투자용 대외계정 개설 시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되고 있다.

### ③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제도

외국인 투자의 한도관리를 위해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장외 거래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 2 외국인의 정의

자본시장법에서는 ‘외국인’<sup>2)</sup>이란 용어와 ‘외국법인등’<sup>3)</sup>이란 용어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외국인’이란 용어가 자본시장법상의 ‘외국인’은 물론 ‘외국법인등’도 포함하고 있다.<sup>4)</sup> 이 안내서에서도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의한 용어를 사용한다.

2) 자본시장법 제168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란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3) 자본시장법 제9조제16항에 따르면 “외국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 공공단체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5.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 나.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공공단체에 의하여 설정·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 다.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에 의하여 설정·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4)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호에서는 제6편(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용하는 “외국인”이란 용어를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법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3 외국인 투자 현황

2012년말 현재 외국인은 411.6조원에 상당하는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하여 시가총액(1,278조원)의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이 개방된 1992년 보유금액 4.1조원(연말기준이며,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4.9%)보다 407.5조원이 증가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비중은 1992년 이후 2004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2004년 7월에는 42.1%로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금융위기, 투자지역 다각화, 신흥국 투자집중 등으로 등락하고 있다.

2012년말 현재 외국인은 91조원<sup>5)</sup>에 상당하는 국내 상장채권을 보유하여 상장채권 총액(1,293조원)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권시장이 개방된 1994년 보유금액 0.04조원(연말기준이며, 상장채권 총액 대비 비중은 0.04%)보다 90.96조원이 증가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채권 순투자(= 순매수 - 만기상환 등) 금액은 199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에는 외국인 보유비중이 7.28%(보유금액은 86.7조원)로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표 I-4>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주식			채권		
	보유	(비중)	순매수	보유	(비중)	순매수
'92년	4.1	(4.9)	1.5			
'93년	11.0	(9.8)	4.3			
'94년	15.4	(10.2)	0.9	0.04	(0.04)	0.04
'95년	16.7	(11.9)	1.4	0.1	(0.05)	0.02
'96년	15.2	(13.0)	3.2	0.1	(0.04)	0.02
'97년	10.7	(13.7)	0.6	0.2	(0.1)	0.2
'98년	25.9	(17.8)	6.1	1.0	(0.3)	3.0
'99년	84.6	(18.9)	2.5	1.2	(0.3)	0.8
'00년	58.6	(27.2)	13.1	0.7	(0.2)	△0.4
'01년	99.1	(32.2)	8.9	0.4	(0.1)	0.2
'02년	97.1	(32.8)	△2.4	0.6	(0.1)	0.5
'03년	147.9	(37.7)	14.6	1.8	(0.3)	1.2
'04년	178.0	(40.1)	12.6	3.2	(0.5)	2.0
'05년	269.8	(37.2)	△2.3	3.3	(0.5)	1.4
'06년	273.1	(35.2)	△11.8	4.6	(0.6)	1.8
'07년	325.4	(30.9)	△30.6	37.0	(4.5)	33.5
'08년	170.7	(27.4)	△45.5	37.5	(4.3)	23.0
'09년	296	(30.4)	23.5	56.5	(5.6)	53.6
'10년	386.4	(31.2)	22.9	74.2	(6.6)	63.1
'11년	351.5	(30.4)	△9.6	83.0	(6.9)	41.2
'12년	411.6	(32.2)	17.6	91.0	(7.0)	38.0

5) 이 중 국채 규모는 57.2조원으로 전체 상장국채의 13.9%를 차지한다.

## II. 외국인의 상장주식 취득한도제도

### 1 취득한도

자본시장법상 공공적 법인<sup>6)</sup>(12.12월말 현재 한국전력공사만 해당)의 지분증권에 대한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는 해당 종목 지분증권 총수의 40%이며, 외국인 1인<sup>7)</sup> 취득한도는 해당 공공적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sup>8)</sup>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우리사주조합 이외의 자는 누구든지 명의여하에 불구하고 자기계산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증권의 매수주문을 받은 때에는 공공적 법인의 주식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한도를 초과한 때에는 당해 주문을 거부하여야 한다.<sup>9)</sup> 또한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외국인에게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sup>10)</sup> 중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sup>11)</sup>

- 6) 자본시장법 제1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는 “공공적 법인”을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1.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일 것
  2.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일 것
  3.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법인일 것
- 7) 금융투자업규정 제6-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1인의 종목별 주식취득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대한민국 내에 설치한 지점은 제외한다)은 합하여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법인의 외국소재 자회사 또는 현지법인은 별도로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3. 금융투자업규정 제6-12조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신청한 자는 별도로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 8) 자본시장법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 9) 금융투자업규정 제6-6조
- 10)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1.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 11) 금융투자업규정 제6-20조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외국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12년 12월말 현재 자본시장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법인은 한국가스공사, KT 등 33개사이며, 해당 주식의 종목 수는 총 34개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업종별, 종류별 또는 종목별, 품목별 취득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sup>12)</sup>

**<표 II-1> 외국인 취득한도 관리 대상 상장주식 현황 (2012. 12월 기준)**

근거법령	법상 한도		정관상 한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전체	1인	전체	1인		
자본시장법 (제168조)	40%	-	-	3%	한국전력	-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49%	-	-	-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아이즈비전, 온세텔레콤, 전파기지국, 이노셀
공기업민영화법 (제18조, 제19조)	-	15%	30%	-	한국가스공사	-
방송법 (제14조)	0%	-	-	-	SBS	KNN, 대구방송
	10%	-	-	-	-	YTN
	49%	-	-	-	화성산업, 현대홈쇼핑, 현대에이치씨앤, 스카이라이프	한국경제TV, CJ오쇼핑, 인포뱅크, SBS콘텐츠허브, 디지털조선, 예당, KTH, 씨씨에스, CJ E&M, GS홈쇼핑, KMH, CJ헬로비전
신문법 (제13조)	30%	-	-	-	-	스포츠서울, 제이콘텐츠리
항공법 (제6조)	49.99 %	-	-	-	대한항공 (우선주 포함), 아시아나항공	-
<b>총 법인 수</b>		<b>34(35)</b>			<b>12(13)</b>	<b>22</b>

12)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7조제2항

## 2 취득한도 초과외의 예외적 허용

### A. 직접투자 등 관련 취득한도의 초과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sup>13)</sup>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종목의 경우 이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직접투자<sup>14)</sup>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식예탁증권<sup>15)</sup> 및 유통주식예탁증권<sup>16)</sup>의 발행과 관련하여 해외예탁기관이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
4. 내국민대우 외국인<sup>17)</sup>이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해외증권<sup>18)</sup>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주식매수선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상속, 증여, 유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3) 금융투자업규정 제6-2조제1항

14)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3호에 따르면 “**직접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15)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5호에 따르면 “**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발행주식 또는 그 주식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예탁증권을 말한다.

16)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6호에 따르면 “**유통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17)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2호에 따르면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 등,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는 제외한다.

- A. 국내에 있는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B.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

18)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7호에 따르면 “**해외증권**”이란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주식예탁증권, 유통주식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9. 외국법인이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0. 기타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위에 따라 취득한도가 소진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종목의 신주인수권증서<sup>19)</sup>를 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sup>20)</sup>

위에서 열거한 공공적 법인의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사유들 중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외국인 1인 취득한도를 초과한 외국인은 초과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초과분을 매각하여야 한다.<sup>21)</sup>

외국예탁결제기관<sup>22)</sup>은 해외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국내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을 발행한 국내법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sup>23)</sup> 다만, 그 지분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및 이미 발행된 주식예탁증권(유통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중 원주로 전환된 수량 이내에서 유통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sup>24)</sup>

## B. 주식옵션등 관련 취득한도의 초과

외국인은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sup>25)</sup>(이하 "주식옵션등"이라 한다)의 콜 옵션 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공적

19) "신주인수권증서"란 상법상 신주배정기준일과 청약일 사이의 신주인수권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권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4조제4항에서 지분증권으로 규정된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에는 ① 신주인수권증서와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모두 포함한다.

20) 금융투자업규정 제6-2조제2항

21) 금융투자업규정 제6-2조제3항

22) 자본시장법 제296조제5호에 따르면 "외국예탁결제기관"이란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을 말한다.

23)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7조제3항 본문

24)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7조제3항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9조

25)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1호에 따르면 "주식워런트증권"이란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하는 파생결합 증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sup>26)</sup> 이 경우 외국인은 한도초과분을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주식옵션등 권리행사배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 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같다)까지 처분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증권 시장(시간외 시장을 제외한다)의 장 종료 10분전까지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장 종료 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에 참가하는 방법 등으로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sup>27)</sup>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외국인별로 처분하여야 할 종목별 수량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산식<sup>28)</sup>에 따라 계산하여 당해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외국인이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당해 외국인은 한도초과분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하고 그 한도초과분을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주식옵션등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sup>29)</sup>

외국인은 주식옵션등의 풋옵션 권리행사 또는 콜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주식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에도 불구하고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 다음날까지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sup>30)</sup>

## C.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관련 취득한도의 초과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주식바스켓 납입을 통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신청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세부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송부해야 하고, 예탁결제원은 이를 취합하여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sup>31)</sup>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sup>32)</sup>

26) 금융투자업규정 제6-3조제1항 전단

27) 금융투자업규정 제6-3조제1항 후단

28) 금융투자업규정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종목별 외국인 처분수량 계산방식 등을 정하고 있다.

29) 금융투자업규정 제6-3조제6항

30) 금융투자업규정 제6-3조제5항

31)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0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이란 상장증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주)코스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2) 금융투자업규정 제6-4조제1항

외국인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sup>33)</sup> 이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한도초과분을 환매일(주식바스켓 수령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처분하여야 한다.<sup>34)</sup>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외국인별로 처분하여야 할 종목별 수량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그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sup>35)</sup> 한도초과분을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청구 시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sup>36)</sup>

### 3 취득한도의 계산 기준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sup>37)</sup>

1. 매수는 호가시점에서 취득한 것으로, 매도는 체결시점에서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인간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경우에는 체결시점에서 취득 및 처분한 것으로 본다.
2. 직접투자자와 주식투자<sup>38)</sup>를 모두 합산하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제외한다.
3. 발행주식 총수 및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수의 계산은 당해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금 납입으로 인하여 납입일에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납입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나의 발행인이 발행한 권리내용이 다른 주식은 각각 하나의 종목으로 본다.

33) 금융투자업규정 제6-4조제2항 전단

34) 금융투자업규정 제6-4조제2항 후단

35) 금융투자업규정 제6-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종목별 외국인 처분수량 계산방식을 정하고 있다.

36) 금융투자업규정 제6-4조제5항

37) 금융투자업규정 제6-5조제1항

38)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4호에 따르면 “주식투자”란 외국인이 직접투자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식옵션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주식옵션 권리행사 배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시 취득한 것으로 보며, 풋옵션 권리행사 또는 콜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인도할 주식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 익일(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같다) 장 종료 시 처분한 것으로 본다.
6.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신청을 위하여 현물로 납입하는 주식은 설정일에 처분한 것으로 보며, 환매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은 환매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4 위반 시 조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취득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취득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매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sup>39)</sup>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당해 증권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투자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sup>40)</sup>

자본시장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외국인의 주식 취득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에서 위반 시 조치사항을 정하고 있다.<sup>41)</sup>

39) 자본시장법 제168조제3항

40) 금융투자업규정 제6-25조

41)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취득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취득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 그 주주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III.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 1 투자등록 대상

외국인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이하 "투자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sup>42)</sup>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sup>43)</sup>

1.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접투자과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예탁결제원에 예탁자계좌를 개설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고 동 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에서 동 기구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의 채권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내국민대우 외국인인 경우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여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본점에 1개의 해외증권관련주식 매도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sup>44)</sup>

42)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8조제1항 전단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제1항·제2항

43)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제3항 및 제6-26조제1항

### <실무 참고사항 Ⅲ-1> 투자등록 시 유의사항

- 내국인이 설립한 외국법인(현지법인)은 외국인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해외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는 투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 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대한민국 내에 설치한 지점은 제외한다)은 합하여 하나의 외국인으로, 외국법인의 외국 소재 자회사 또는 현지법인은 별도의 외국인으로 투자등록 하여야 한다.
- 외국인 투자등록은 계산주체의 명의로 해야 하므로 모펀드와 자펀드가 모두 등록할 수 없다. 모펀드와 자펀드가 모두 등록할 경우 실질적 소유자는 하나임에도 투자등록증은 여러 개가 발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외국펀드의 모펀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펀드(자펀드)는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한편 모펀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자펀드는 별도의 계산주체이므로, 각자의 명의로 투자등록할 수 있다.
- **주식투자등록증과 채권투자등록증**
  - 종전에는 주식 투자등록과 채권 투자등록이 각각 존재하였으나(주식번호 7812번 이전), 1998년 5월 26일 舊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하나의 투자등록증으로 주식 및 채권 투자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동 감독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주식투자등록증만 발급받은 경우 동 감독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채권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투자등록을 따로 하여야 한다.
  - 투자하는 증권의 종류별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므로 주식투자등록번호와 채권투자등록번호가 상이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식매매거래계좌와 채권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할 때 투자등록번호를 달리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주식투자등록번호가 1234이고 채권투자등록번호가 2345인 외국인이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외국인의 채권투자등록번호를 1234로 입력하여 처리하면 당해 채권이 다른 외국인의 채권거래계좌로 입고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2 외국인 투자등록 현황

2012년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 수는 35,682명으로 개인과 기관이 각각 9,619명, 26,063명 등록되어 있다. 이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미국 11,953명, 일본 3,405명, 영국 2,189명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44)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제2항

**<표 Ⅲ-1> 투자주체별 외국인 투자자 등록 현황 (단위: 명)**

구분	개인	투자회사			은행	증권	보험	연기금	기 타	소 계	누 계
		회사형	계약형	기타							
'91년	421	96	-		12	21	2	-	13	565	565
'92년	256	352	136		50	52	21	102	38	1,007	1,572
'93년	415	262	234		39	15	25	138	45	1,173	2,745
'94년	224	199	113		40	31	11	42	22	682	3,427
'95년	204	318	185		24	19	17	69	23	859	4,286
'96년	262	405	112		40	53	36	81	19	1,008	5,294
'97년	213	666	120		38	59	32	44	48	1,220	6,514
'98년	1,156	479	86		39	35	15	46	110	1,966	8,480
'99년	718	401	75		40	25	21	76	118	1,474	9,954
'00년	666	592	135		35	26	27	88	225	1,794	11,748
'01년	259	429	108		12	25	21	80	178	1,112	12,860
'02년	230	599	88		18	27	22	108	176	1,268	14,128
'03년	218	492	70		25	34	18	116	234	1,207	15,335
'04년	296	650	62		23	27	13	141	352	1,564	16,899
'05년	298	633	96		30	40	24	124	355	1,600	18,499
'06년	399	682	133		36	24	16	158	688	2,136	20,635
'07년	486	643	167		36	40	15	121	850	2,358	22,993
'08년	817	699	149		41	58	10	92	881	2,747	25,740
'09년	579	723	160		12	34	13	65	658	2,244	27,984
'10년	816	1,050	401		18	40	26	103	622	3,076	31,060
'11년	394	1,120	409		27	53	27	106	434	2,570	33,630
'12년	292	846	272	40	30	62	17	93	400	2,052	35,682
<b>누계</b>	<b>9,619</b>	<b>12,336</b>	<b>3,311</b>	<b>40</b>	<b>665</b>	<b>800</b>	<b>429</b>	<b>1,993</b>	<b>6,489</b>	<b>35,682</b>	

**<표 Ⅲ-2> 국적별 외국인 투자자 등록 현황 (단위: 명)**

구분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말레이시아	기 타	소 계	누 계
'91년	104	90	60	3	1	307	565	565
'92년	399	224	50	21	7	306	1,007	1,572
'93년	480	164	127	47	30	325	1,173	2,745
'94년	245	87	56	40	17	237	682	3,427
'95년	325	117	72	44	37	264	859	4,286
'96년	377	37	86	42	91	375	1,008	5,294
'97년	439	87	77	49	127	441	1,220	6,514
'98년	856	53	149	62	50	796	1,966	8,480
'99년	675	104	127	95	43	431	1,475	9,955
'00년	702	94	139	126	73	660	1,794	11,749
'01년	399	73	123	81	33	402	1,111	12,860
'02년	429	98	85	106	26	524	1,268	14,128
'03년	384	92	92	119	14	506	1,207	15,335
'04년	580	104	80	99	11	690	1,564	16,899
'05년	552	67	157	84	26	714	1,600	18,499
'06년	693	132	212	108	74	917	2,136	20,635
'07년	784	110	246	150	40	1,028	2,358	22,993
'08년	789	67	480	175	29	1,207	2,747	25,740
'09년	676	76	230	134	8	1,120	2,244	27,984
'10년	757	112	390	145	21	1,651	3,076	31,060
'11년	725	104	192	163	23	1,363	2,570	33,630
'12년	583	97	175	93	29	1,075	2,052	35,682
<b>누계</b>	<b>11,953</b>	<b>2,189</b>	<b>3,405</b>	<b>1,986</b>	<b>810</b>	<b>15,339</b>	<b>35,682</b>	

### 3 투자등록 절차

#### A. 투자등록 신청

외국인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또는 재발행,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원본(또는 공증 받은 사본)을 구비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금융감독원(금융투자감독국 증권시장팀)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임대리인이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전자화된 형태로 금융감독원에 송부하면, 금융감독원이 투자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외국인은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보관기관 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sup>45)</sup> 이에 따라 선임된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sup>46)</sup>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외국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투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투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등록부에 투자등록의 주요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sup>47)</sup>

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거나 투자등록신청서 중 인적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서 또는 舊투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금융

45)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제1항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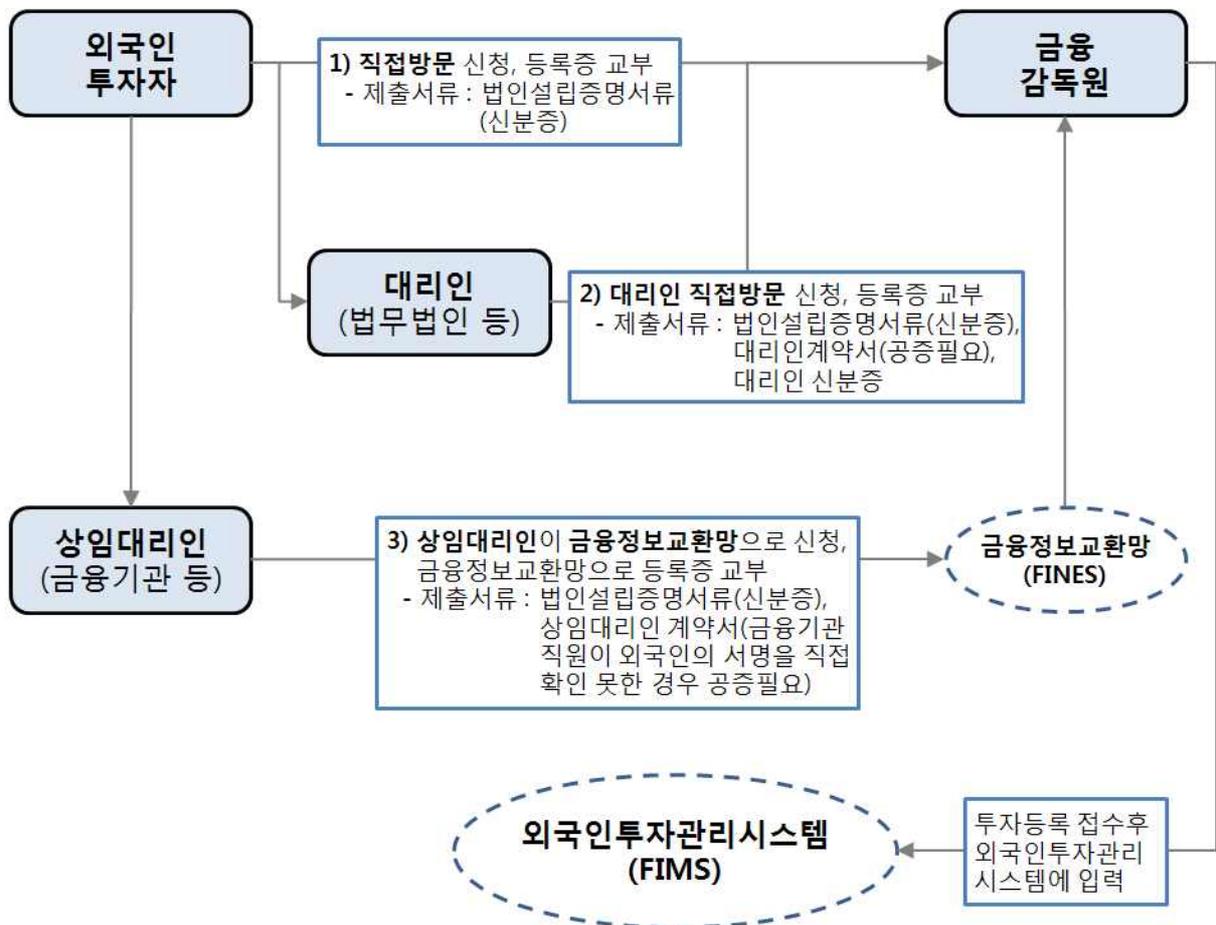
46)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제2항

47) 금융투자업규정 제6-11조제1항 및 제2항

감독원장에게 투자등록증의 재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sup>48)</sup>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sup>49)</sup>에 제시하고 투자등록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sup>50)</sup>

<그림 Ⅲ-1>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절차



※ 법인설립증명서류(신분증)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 필요

48) 금융투자업규정 제6-11조제3항

49)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8호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50)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제1항

**<표 Ⅲ-3>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공통서류		추가 서류	
	(직접 방문 신청 시 추가서류 없음)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	대리인(법무법인 등)을 선임하여 신청
신규	① 투자등록신청서			
	②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변경/ 재발행	① 투자등록변경신청서			
	② 舊 투자등록증	③(④) 공문	③(④) 공증 받은 위임장	
	③ 인적사항 변경과 관련한 공적서류	④(⑤) 상임대리인계약서	④(⑤) 대리인 신분증	
취소	① 본인의 투자등록 취소명령서			
	② 舊 투자등록증			

**<표 Ⅲ-4> 신규 투자등록 신청 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공적 서류**

개 인	당해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 등으로 성명,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공증이 필요하다.
외국법인	설립국 정부·지방자치단체·공적 규제감독기관이 발급한 것[설립증명서, 일명 COI(Certificate of Incorporation)]으로서 법인 등의 명칭, 설립 연월일, 발급기관명,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공증이 필요하다.

**<표 Ⅲ-5> 변경등록 신청 시 인적사항 변경과 관련한 공적 서류**

개 인	당해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 등으로 성명,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본을 제출할 경우 공증이 필요하다.
외국법인	설립국 정부·지방자치단체·공적 규제감독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인적사항 등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공증이 필요하다.

### <실무 참고사항 Ⅲ-2> 상임대리인을 통해 금융정보교환망(FINES)으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상임대리인 계약서

- ①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의 법적 서명권자)과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
- ② 상임대리인이 계약서를 우편 등으로 전달받는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하다.

#### □ 상임대리인이 수령·보관하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공적 서류

- ① 원본이거나,
- ② 원본대조필(Certified True Copy)\* 확인을 받은 사본이어야 한다.

\* 복사본의 내용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날인을 하는 자는 공증인(Notary Public), 현지 보관기관(Global Custodian), 자산운용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수탁회사(Trustee Company)이다.

-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제출하는 상임대리인 계약서와 본인 확인 공적 서류 등은 모두 상임대리인으로부터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실무 참고사항 Ⅲ-3> 상임대리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상임대리인은 외국법인등의 투자등록신청서상 법인 주소,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 하거나 현지 보관기관과 협력하여 동 법인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상임대리인은 여권이나 법인설립허가서의 위조 및 도용, 투자등록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허위 기재 및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 상임대리인은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상임대리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상임대리인은 투자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본인과 본국 주무관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투자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 <실무 참고사항 Ⅲ-4>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서<sup>51)</sup> 관련 유의사항

### □ 외국법인등은 투자등록신청서에 있는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특히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3. 거래관계 등'과 '4. 투자자 개황'에 해당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반송됨으로써 등록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 세부 항목별 유의사항

#### 2. 투자자 구분, 나. 업종

- 외국법인등은 영위하는 업종을 투자매매(중개)업자, 은행, 보험회사, 집합투자기구(회사형, 계약형, 기타형), 신탁업자, 연기금, 기타금융회사, 기타 중 하나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공공기관의 기금 등을 투자자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주체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법인의 성격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업종 분류상 '기타'에는 제조업 등 금융업과 무관한 법인만이 해당되므로, 금융업을 영위하지만 신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분류된 금융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금융회사'로 기재하여야 한다.

#### 3. 거래관계 등, 나. 보관기관

-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을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하며(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제1항), 이러한 보관기관은 외국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중인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제2항 본문).

#### 4. 투자자 개황(외국법인등의 경우에만 작성), 라. 회사관련기관(국적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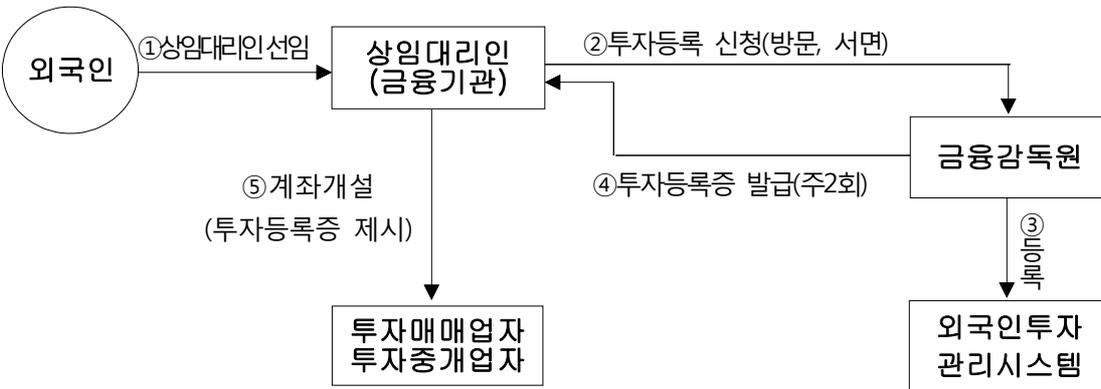
- 자문회사(Advisory Company)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5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34호

### <실무 참고사항 Ⅲ-5> 외국인 투자등록업무 전면 전산화

- 종전에는 외국인이나 상임대리인이 직접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투자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투자등록증이 발부되면 다시 방문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 이에 따라 투자등록증 발급에 4일 정도 소요되어 투자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급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가동하였다.
  - 동 시스템은 금융기관(외국인의 상임대리인)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송부하면, 금융감독원이 투자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로 투자등록증('11년 2,570여건) 발급 소요기간이 4일에서 최단 4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외국인의 적기 계좌개설 및 신속한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투자등록을 위해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등록사항 변경('11년 580여건) 및 취소('11년 330여건)도 동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 전산화 전 투자등록 절차



#### □ 전산화 이후 투자등록 절차



\*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06.8월 도입된 자료입수시스템으로서, 금융회사가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One Stop 처리한다.

## B. 투자등록의 거부, 취소 및 효력 정지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등록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sup>52)</sup>

1. 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인 경우
2. 투자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투자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4. 이중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자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sup>53)</sup>

1. 투자등록 이후 투자등록의 거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금융투자업규정,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외국인이 투자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증권거래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4 투자등록의 특례

외국인이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sup>54)</su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투자등록**을 할 수 있다.<sup>55)</sup>

1. 국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영업소 및 일본 투자자의 유가증권자금등송금관련통첩(국금41271-235) 제1호에서 규정한 일본에 소재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

52) 금융투자업규정 제6-13조제1항

53) 금융투자업규정 제6-13조제2항

54)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제2항

55) 금융투자업규정 제6-12조제1항

래에 관한 위탁의 주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 현지영업점 및 일본 소재 증권회사가 현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매매를 당해 현지 영업점 명의로 처리하기 위해 국내증권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명의계좌(Nominee Account)**라 한다.

2. 외국 금융기관등이 투자자산을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고객자산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외국 금융기관등이 투자자산을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를 **고객분리계좌(CSA; Customer Segregated Account)**라 한다.
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집단<sup>56)</sup>의 주문을 일괄매매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sup>57)</sup> 다만, 이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법령, 계약 등에 따라 개별 고유번호(ID)를 부여받은 다수 외국법인등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된 동일인(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대표투자자 명의 계좌(A Single Designated Investor Account)**라 하며, 증권회사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해 개설한 증권회사 명의의 계좌를 **외국인거래 전용계좌(Special Nominee Accounts)**라 한다.

해외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원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외예탁기관의 자기자산 투자를 위한 투자등록과 별도로 **예탁증권의 원주별로** 투자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명의로는 당해 해외예탁기관명 외에 예탁증권의 종류 및 원주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sup>58)</sup>

외국인이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모집·매출되는 원

56)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9호에 따르면 “투자자집단”이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다수 외국인(외국법인등에 한한다)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경우 그 외국인들을 말한다.

57)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3항에 따르면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이를 매매 다음날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분대상 외국인은 투자운용자가 매매거래 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

58) 금융투자업규정 제6-12조제2항

주를 취득하고자 하거나 외국 증권시장에 복수 상장된 상장증권의 외국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및 처분(외국예탁기관의 집중예탁인출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 종목별로** 투자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명의를 당해 외국예탁기관명 외에 증권 종목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sup>59)</sup>

**<표 Ⅲ-6>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투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금투업 규정	투자등록 주체	내용	비고	추가 제출서류*
§6-12①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투자매매·중개업자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 영업점</li> <li>일본에 소재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증권사 해외영업점·일본증권회사가 현지 외국인(투자등록하지 아니함)의 매매거래 위탁주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ominee Account임을 부기</li> </ul>	
§6-12①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 금융기관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자산을 자기자산과 고객(투자등록하지 아니함)의 자산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신탁재산 운용, 개인고객을 위한 Private Banking, 일임계좌 운용, Wrap Account에 한하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자산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부기 (Customer's Segregated Accou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등록 시 CSA 약약서</li> </ul>
§6-12①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증권사가 주식 일괄주문 후 미리 정해진 배분대상 외국인(투자등록함)에게 배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부기(Special Nominee Accou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등록 사유서 제출</li> <li>매매거래 전에 투자자집단 신고서를 당해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신고</li> </ul>
§6-7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이를 매매 다음날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들(투자등록함)에게 배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매거래 전에 투자자집단 신고서를 당해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신고</li> </ul>
§6-10③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예탁결제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 기구 내에 결제계좌를 가진 투자자(투자등록하지 아니함)가 동 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li> </ul>		

\* 투자등록의 특례규정에 의한 별도의 투자등록 신청 시에는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9) 금융투자업규정 제6-12조제3항

### <실무 참고사항 Ⅲ-6> 고객분리계좌(CSA) 관련 유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6-12조제1항제2호의 '외국 금융기관 등이 투자자산을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1.2월부터 신탁재산 운용 외에도 개인고객을 위한 Private Banking 및 일임계좌 운용 등(단순중개를 위한 수탁은 제외)의 경우가 포함된다.
- 외국 금융기관 등은 금융당국이 감독·조사목적상 고객분리계좌 실질 투자주체에 관한 자료(증권 매매거래 및 그 밖에 투자내역에 관한 자료 등)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장내거래 의무화 규정 준수를 위해 고객분리계좌 내의 실질 투자주체간 장외매매 또는 Netting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신탁업무 시에만 고객분리계좌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 5 위반 시 조치

자본시장법규에서 정한 투자등록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투자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sup>60)</sup>

60) 금융투자업규정 제6-25조제2항

## IV.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제도

### 1 장내거래 의무화 및 장외거래의 예외적 허용

외국인은 상장증권을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여야 한다.<sup>61)</sup>

금융투자업규정<sup>62)</sup>에 따르면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증권을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

1. 직접투자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2. 해외증권의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의 취득
3.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주식매수선택권의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의 취득
4.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의 취득
5. 상속, 증여, 유증에 따른 주식의 취득
6. 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른 주식의 취득
7.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
8. 자본시장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에 따른 주식의 취득 및 처분
9.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의 매매거래. 이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10.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공공적법인의 지분증권의 외국인간 매매거래. 이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간에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 A.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지위에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 B. 금융투자업규정 제6-2조제3항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외국인 1인 취득한도를 초과한 외국인이 초과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61)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8조제2항제1호가목

62)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이내에 그 초과분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예탁증권 또는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원주취득
12.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외국에서 모집·매출되는 원주의 취득
13. 외국 증권시장에 복수 상장된 상장증권의 외국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및 처분(외국예탁기관의 집중예탁·인출을 포함한다)
14. 조건부매매<sup>63)</sup>
15. 투자매매업자를 매매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상장채권의 매매거래
16. 상장수익증권의 매매거래
17.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대차거래.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가 적용되는 종목은 외국인간의 대차거래에 한한다.
18. 전자증권중개회사<sup>64)</sup>를 통한 증권매매거래
19.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환매로 인한 처분 및 취득
20.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 방식의 증권매매거래
21.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증권매매취득
2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을 말한다<sup>65)</sup>) 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투자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에 한한다) 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
23.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상호간의 공정가격(장외거래일의 시장 증가 등을 의미한다)에 의한 증권매매거래

63)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6호에 따르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증권매매를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도(이하 “**조건부매도**”라 한다)
2. 증권매매를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수(이하 “**조건부매수**”라 한다)

64) 금융투자업규정 제3-9조에 따르면 “**전자증권중개회사**”란 자본시장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65)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1조제1항

24.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권시장 외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외거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인은 당해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sup>66)</sup>

1.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장외과생상품의 결제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2. 외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13제1항이 정하는 사채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사채를 말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원의 인가·결정·명령, 정부의 지도·권고·승인 등에 근거한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외국인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지만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외거래가 불가피함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사전에 매매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장외거래가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한편 외국인간 증권의 장외 이전으로서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Beneficiary owner)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로 보지 아니한다.<sup>67)</sup> 원칙적으로 투자등록은 계산주체의 명의로 해야 하나, 법규에서 허용된 투자등록의 특례에 따라 본인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등록명의를 다른 외국인 투자자간이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상장증권의 장외 이전이 가능하다. 이 경우 증권을 양수하는 외국인은 상임대리인을 거쳐 다음의 서류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up>68)</sup>

66)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제1항

67)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제2항 전단

68)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제2항 후단

1.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이전이 이루어진 국가의 감독기관 또는 양수인이 속한 국가의 회계사, 변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

## 2 장외거래 신고

외국인이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권시장 외에서 상장증권을 양수·양도한 때 또는 상장법인 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하거나 「증권시장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 등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의 별책서식<sup>69)</sup>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up>70)</sup>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한 신고사항의 경우에는 대리신고자(주관회사, 위탁결제원 등)가 해당 시스템에 거래내역을 직접 전송한다.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의 별책서식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외국인은 ①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②상임대리인을 통해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이용하여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외거래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 : 신고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직인이 찍힌 공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서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32호, 제33호, 제48호, 제49호 및 제52호에 따라 해당 장외거래 신고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증빙서류 : 「표 IV-1. 외국인의 장외양수도 및 장외이전의 신고 방법 및 절차」에서 제시된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장외거래의 사실을 입증할

69)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32호 「증권시장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 제33호 「국내 및 외국증권시장간 증권 반입·반출 신고서」, 제48호 「신규상장 및 합병에 따른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보고」, 제49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투자 현황 및 변동상황 신고서」, 제52호 「실질 소유자가 동일한 외국인간 증권의 장외 이전 신고서」

70) 금융투자업규정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sup>71)</sup> 외국인투자등록증 및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외국인 투자등록 시 이미 제출한 서류들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표 IV-1> 외국인의 장외거래 신고 방법 및 절차**

장외 양수도 등의 사유	금투업 규정	신고 방법	증빙서류	신고 의무자	대리 신고자
1. 자본시장법 §133에 따른 공개매수에 따른 주식의 취득·처분	§6-8①(1) §6-7①(4)				
2.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 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의 매매거래	§6-8①(1) §6-7①(5)				
3. 자본시장법시행령 §187①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공공적법인의 지분증권의 외국인간 매매거래	§6-8①(1) §6-7①(6)				
4. 주식예탁증권 또는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원주 취득	§6-8①(1) §6-7①(7)	FIMS	전산처리	외국인	투자매매·중개업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5. 투자매매업자를 매매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상장채권의 매매거래	§6-8①(1) §6-7①(11)				
6.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대차거래	§6-8①(1) §6-7①(13)				
7.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증권의 취득	§6-8①(1) §6-7①(17)				
8.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주식매수선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	§6-8①(2) §6-7①(2) §6-2①(6)	서식 제32호	①계좌거래 내역서 ②신주입고 통보서		
9.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	§6-8①(2) §6-7①(3)	서식 제32호	①매수대금내역 ②매수청구 총괄현황	외국인	예탁결제원
10.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	§6-8①(4) §6-7①(2) §6-2①(5)	단서 서식 제32호	①계좌거래 내역서 ②예탁계좌부& 권리행사일정		

71) 금융투자업규정 제9-1조

장외 양수도 등의 사유	금투업 규정	신고 방법	증빙서류	신고 의무자	대리 신고자
11. 증권이 반입·반출되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거나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출된 경우	§6-8①(4) 단서	서식 제33호	①반입·반출 요청서 ②결제내역	외국인	예탁결제원
12. 주식예탁증권 또는 유통주식예탁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	§6-8①(3) 단서	FIMS	전산처리		
13.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회사의 합병· 분할·분할합병, 감자, 주식의 병합 등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거나 상실	§6-8②(1)	FIMS	전산처리		
14. 직접투자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직접투자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6-8①(3) §6-7①(1)	서식 제32호	①외국인투자 기업등록 증명서 ②계좌거래 내역서	외국인	상임대리인
15.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	§6-8①(3) §6-7①(2) §6-2①(7)	서식 제32호	①계좌거래 내역서 ②예탁계좌부& 권리행사일정		
16. 상속, 증여, 유증으로 주식을 취득	§6-8①(3) §6-7①(2) §6-2①(8))	서식 제32호	①계좌거래 내역서 ②상속·증여 계약서/세금 신고서		
17. 외국법인이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	§6-8①(3) §6-7①(2) §6-2①(9)	서식 제32호	①계좌거래 내역서 ②정부·감독 기관이 발급한 합병증명서/ 합병을 알리는 투자설명서		
18. 주식예탁증권 또는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원주 취득	§6-8①(3) §6-7①(7)	서식 제32호	①계좌거래 내역서 ②원주보관계약 서/해외DR확인서 ③ 당해 취득에 대한 원주발행 회사 동의서		

장외 양수도 등의 사유	금투업 규정	신고 방법	증빙서류	신고 의무자	대리 신고자
19.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외국에서 모집·매출되는 원주의 취득	§6-8①(3) §6-7①(8)	서식 제32호	①계좌거래 내역서		
20.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 방식의 증권의 매매거래	§6-8①(3) §6-7①(16)	서식 제32호	①계좌거래 내역서 ②공개입찰 공고문 및 입찰계약서		
21. 동일인이 운영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상호간의 공정가격에 의한 증권의 매매거래	§6-8①(3) §6-7①(19)	서식 제32호	매매사유·내역, 공정가격을 명시한 자료		
22. 규정 §6-7①제8호 <sup>1)</sup> 및 제9호 <sup>2)</sup> 에 따라 외국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 및 국내에서 취득한 증권을 외국증권시장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6-8①(4) 본문	서식 제33호	①반입·반출 요청서 ②결제내역 또는 KDR 해지의뢰 처리내역		
주 : 1)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모집·매출되는 원주의 취득 2) 외국 증권시장에 복수 상장된 상장증권의 외국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및 처분 (외국 예탁기관의 집중예탁·인출을 포함한다)				외국인	상임대리인
23. 규정 제6-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취득 (제3자 배정 등)	§6-8②(3)	서식 제32호	①주금납입 증명서 ②주식배정 통보서		
24.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6-7①(20)	서식 제32호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24-1.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결제에 따른 증권의 취득·처분	세칙 §5-4①(1)	서식 제32호	거래상대방이 명시된 거래상세 내역서		
24-2. 외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의 권리행사에 따른 증권의 취득·처분	세칙 §5-4①(2)	서식 제32호	①계좌거래 내역서 ②신주입고 통보서(취득)		
24-3. 법원의 인가·결정·명령, 정부의 지도·권고·승인 등에 근거한 증권의	세칙 §5-4①(3)	서식 제32호	①법원 결정문/ 정부 승인문서		

장외 양수도 등의 사유	금투업 규정	신고 방법	증빙서류	신고 의무자	대리 신고자
취득·처분			(공증) ②계좌거래 내역서		
25-1. 외국인간 증권의 장외 이전으로서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펀드, CSA 계좌 분리)	세칙 §5-4②	서식 제52호	①양도·양수인의 동일인 입증 자료 (펀드: 투자설명서 <sup>1)</sup> , CSA : 고객과 해당 금융기관 간 계약서) ②감독기관, 회계사, 변호사 등이 실질적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신	외국인	상임대리인
25-2. 외국인간 증권의 장외 이전으로서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귀화)			①내국인 당시 여권 사본 & 외국인 귀화 후 여권 사본 ②계좌거래 내역서		
26. 모집·매출하는 주식·채권을 청약의 방법으로 취득	§6-8②(2)	FIMS	전산처리	외국인	주관회사
27. 외국인이 주식바스켓 납입을 통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신청하거나 환매를 청구	§6-4①	FIMS	전산처리	투자매매· 중개업자, 예탁결제원	
28. 외국인이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 <sup>1)</sup> 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본인의 계좌에 이전하거나 취득한 증권을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처분하기 위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계좌로 이전시키는 경우 및 국제 예탁결제기구간 증권을 이전	§6-7①(18) 세칙 §5-1(4)	FIMS	전산처리	외국인	예탁결제원
주 :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계좌를					

장외 양수도 등의 사유	금투업 규정	신고 방법	증빙서류	신고 의무자	대리 신고자
이용하는 외국인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결제 이루어지는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 증권 매매거래					
29.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법인 및 타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의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세칙 §5-3(4)	서식 제48호	서식 제48호로 같음	상장법인	
30-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증권시장에서의 매각으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	세칙 §5-3(5)(가)	서식 제49호	매매보고서		투자매매· 중개업자
30-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증권시장 밖에서의 양수·양도(신규 직접 투자,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포함) 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	세칙 §5-3(5)(나)	서식 제49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외국인	상장법인
31. 외국 증권시장에 복수 상장된 상장증권의 외국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및 처분(외국 예탁기관의 집중예탁·인출 포함)	§6-7①(9)				
32. 조건부매매	§6-7①(10)				
33. 상장수익증권의 매매거래	§6-7①(12)				
34. 전자증권중개회사를 통한 증권매매거래	§6-7①(14)				
3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환매로 인한 처분 및 취득	§6-7①(15)				

주 : 1) 투자설명서를 통해 펀드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위에 제시된 증빙서류는 신고인의 이해 및 편의를 위한 예시일 뿐이며 이외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

### <표 IV-2> 외국인의 장외양수도 거래내역 정기보고

장외 양수도 사유	금투업 규정	보고 방법	증빙 서류	보고 의무자	대리 보고자
국제예탁결제기구(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국제예탁결제 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투자등록이 면제된 외국인 간에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6-7①(18)  세칙 §5-1②③	서식 제37호 <sup>72)</sup>	거래 내역서	국제예탁결제 기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예탁결제원에 보고	예탁결제원은 매월 말일 기준 으로 익월 15일 까지 금융감독 원장에게 보고

72)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37호 「국제예탁결제기구의 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채권거래 내역 보고서」

### 3 투자자집단의 증권거래 등

투자자집단<sup>73)</sup>을 위해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A Single Designated Investor Account)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Special Nominee Accounts)를 통해 주식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이를 매매 다음 날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분대상 외국인은 투자운용자가 매매거래 전에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35호 「투자자집단 신고서」의 서식에 따라 당해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신고한 자에 한한다.<sup>74)</sup> 투자등록한 외국인이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경우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이를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up>75)</sup>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식을 투자자집단에 배분하는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투자운용자와 당해 투자자집단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배정단가를 정하여 체결된 주식을 배분할 수 있다.<sup>76)</sup>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식을 투자자집단 내 외국인들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주문·체결·배분내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sup>77)</sup>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들은 증권시장 외에서 상호간에 공정가격에 의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나,<sup>78)</sup> 당해 외국인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32호 「증권시장 외에서의 증

73)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9호에 따르면 “투자자집단”이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다수 외국인(외국법인등에 한한다)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경우 그 외국인들을 말한다.

74)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3항

75)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제4항

76)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4항

77)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5항

78)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19호

권의 양수 또는 양도 신고서」의 서식에 따라 해당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up>79)</sup>

#### <실무 참고사항 IV-1> 외국인의 상장증권 장외양수도 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은 모집·매출하는 채권을 청약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업 규정 제6-8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주관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외국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 규정 제6-8조제2항제1호(유·무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같은 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32호 「증권시장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 신고서」의 서식에 따라 해당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발행시장에서 상장법인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대리 신고자 및 신고 방식
  -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취득 시 예탁결제원이 FIMS를 통하여 신고
  - 모집·매출하는 주식·채권을 청약하여 취득 시 주관회사가 FIMS를 통해 신고
  - 기타 방식(예 : 제3자배정)으로 발행시장에서 주식 취득 시 상임대리인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32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
- 외국인의 투자등록의무와 장외양수도 신고의무는 상장증권을 취득할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비상장주식 취득 시에는 등록·신고의무가 없으나, 이후 그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상장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고 상장 이후에 이루어진 장외양수도 내역도 신고하여야 한다.
  - 한편, 외국인의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등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으로 문의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제4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법인 및 타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은 그 법인의 외국인 주식취득현황을 별책서식 1 제48호의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제5호 및 별책서식 1 제49호의 서식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취득내역(소유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서의 매각으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위탁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신규 직접투자,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시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환은행에 변동 신고한 후<sup>80)</sup>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고,<sup>81)</sup>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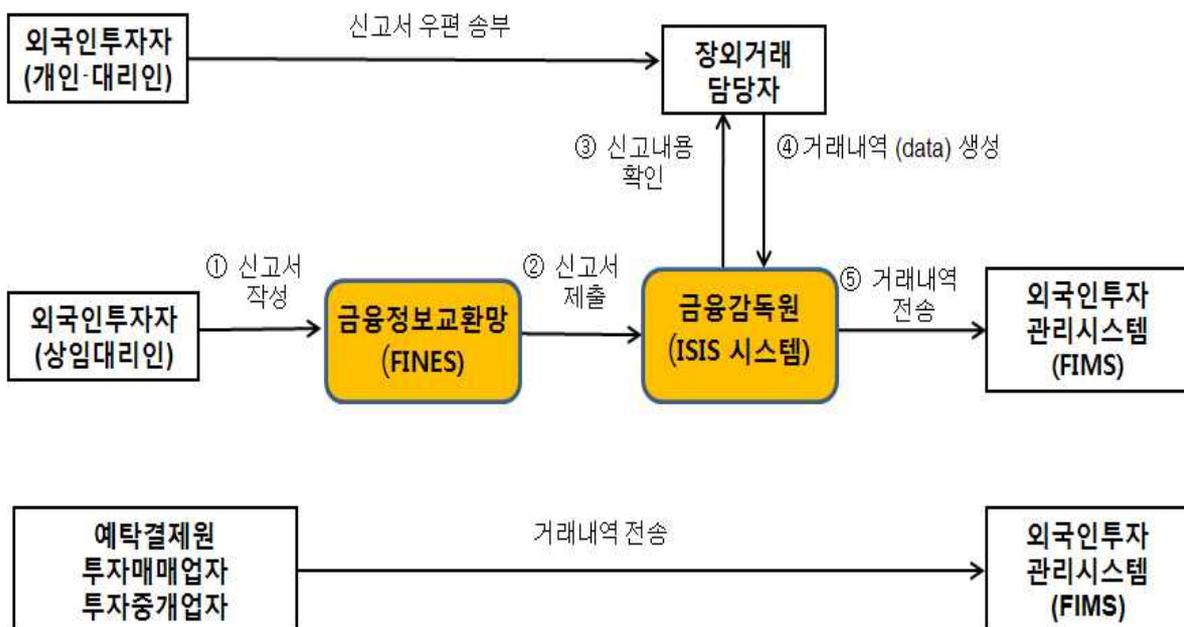
79) 금융투자업규정 제6-8조제1항제3호

3.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직접투자현황을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실무 참고사항 IV-2> 외국인의 상장증권 장외거래 신고업무 전산화

- 종전에는 외국인이나 상임대리인 등이 증빙이 첨부된 장외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 FAX 또는 우편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다.
  - 그러면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전자문서 또는 FAX 등으로 접수된 장외거래 신고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검토한 후 당일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에 입력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장외거래 신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조회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장외거래 신고내역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신고된 정보가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0. 7월부터 가동하였다.
  - 이는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역을 전산화하여 사무자동화시스템(ISIS)을 통해 접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자의 신고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ISIS에 직접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 전산화 이후 외국인의 상장증권 장외거래 신고 절차



8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

81) 금융투자업규정 제6-8조제2항제1호

## 4 보고사항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상임대리인·예탁결제원·해외예탁결제기관·보관기관·금융기관 및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외국인의 증권 매매거래, 그 밖에 투자내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up>82)</sup>

이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sup>83)</sup>

1. **외국인**은 본인의 상장증권 매매거래내역(주식옵션의 권리행사 및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처분내역을 포함한다) 및 계좌개설내역(주식옵션의 주식결제용 계좌개설내역을 포함한다)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sup>84)</sup>은 그 금융기관에서의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종류별 매매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업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관기관**<sup>85)</sup>은 외국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 외국보관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에 증권을 보관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그 보유내역을 직접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직접투자현황을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82) 금융투자업규정 제6-24조

83) 금융투자업규정 제6-2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

84)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8호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85)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제1항에 따르면 “**보관기관**”이란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규정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보관기관을 말한다.

5.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법인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6.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해외예탁기관은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잔고를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탁계약 또는 보관계약을 체결·갱신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을 당해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IV-3> 금융감독원에 대한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 의무자	대리 보고자	관련 규정	보고 방식 <sup>1)</sup>
외국인 본인의 상장증권 매매거래내역(주식옵션의 권리행사 및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처분내역 포함) 및 계좌개설내역(주식옵션의 주식결제용 계좌개설내역 포함)	외국인		세칙 §5-3(1)	FIMS
익월 15일까지 당해 금융기관에서의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종류별 매매상황 보고	금융기관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종금협회 등	세칙 §5-3(2)	서식 제47호
익월 15일까지 외국인의 증권 보관현황 보고	보관기관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등	세칙 §5-3(3)	서식 제47호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외국인 직접투자현황 보고	외국인	상장법인	세칙 §5-3(5)	서식 제49호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 (변경 시에도 신고)	상장법인		세칙 §5-3(6)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외국인의 증권 보관현황 일괄 보고	외국인	보관기관	세칙 §5-3(7)	서식 제50호

보고사항	보고 의무자	대리 보고자	관련 규정	보고 방식 <sup>1)</sup>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잔고 및 예탁계약 또는 보관계약의 체결·갱신 또는 해지 보고	해외 예탁기관		세칙 §5-3(8)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 보고	외국인	상임대리인	세칙 §5-3(9)	서식 제51호

주 : 1)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해서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7호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매매거래 및 취득 증권 보관현황」, 제49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투자 현황 및 변동상황 신고서」, 제50호 「외국인의 취득 증권 보관현황 보고」, 제51호 「상임대리인 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 보고」 등의 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 5 위반 시 조치

자본시장법규에서 정한 외국인의 상장증권 장내거래 의무화 및 장외양수도 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매한 외국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투자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sup>86)</sup>

86) 금융투자업규정 제6-25조제3항

## 부록 1 외국인인의 국내 증권 투자 시 참고사항

### 1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절차<sup>8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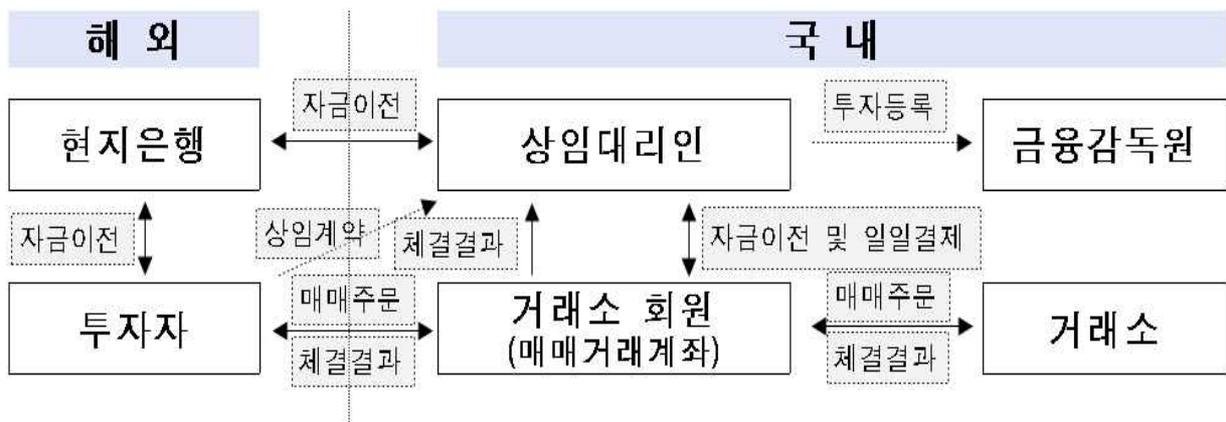
#### A. 계좌 개설 및 주문 제출

투자자가 거래소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후 투자자는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회원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고 회원사는 해당 주문을 접수순서에 따라 거래소로 제출(호가)한다.<sup>88)</sup>

#### B. 매매 체결 및 체결 결과 통보

회원으로부터 매매거래 호가를 접수한 거래소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매매체결원칙에 따라 매매거래를 성립(체결)시키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회원에 통보한다. 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보 받은 체결결과를 다시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그림 1> 외국인인의 증권투자 절차



출처 : Introduction to Trading at KRX Stock Market, p.6. KRX('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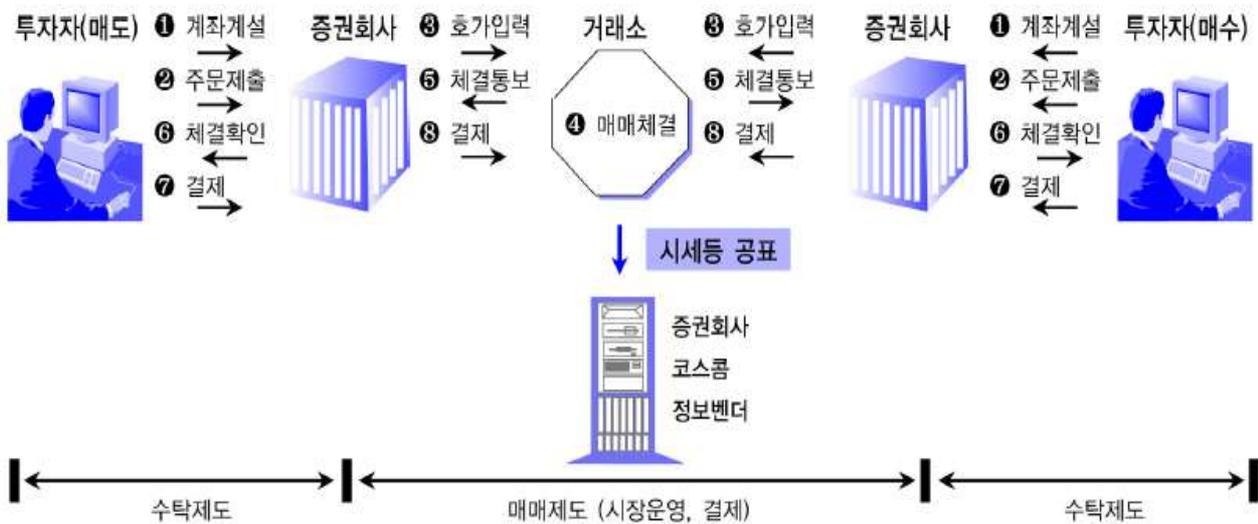
#### C. 결제

87) 이 절은 「Introduction to Trading at KRX Stock Market, pp.5-7, KRX('11.7)」을 번역한 것임

88) 투자자의 매매거래 의사표시를 '주문'이라 하고, 거래소 회원의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거래 의사표시를 '호가'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증권시장에서의 결제는 규정에 의해 T+2일, 즉 매매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휴장일 제외)에 이루어진다. 투자자는 체결결과에 따라 결제일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회원사에 납부하고, 반대로 회원사는 투자자에 매도대금을 지급하고 매수증권을 계좌에 입고한다. 이와는 별도로 회원사와 거래소간에도 체결결과에 대한 결제가 매일 이루어진다. 회원사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거래소에 납부하면 거래소가 이를 상대방 회원사에 지급함으로써 최종 결제가 완료된다.

<그림 2> 주식 매매거래 흐름도



출처 : 2011 주식시장 매매제도의 이해, p.9, 한국거래소('11.3)

## 2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 투자 절차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투자등록 → 계좌개설 → 매매주문 및 결과보고 → 결제지시 및 자금입금 → 결제이행 → 결제완료 통보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A. 계좌 개설

투자자가 거래소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후 투자자는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회원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고 회원사는 해당 주문을 접수순서에

따라 거래소로 제출(호가)한다.

## B. 매매 주문 및 결과 보고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임대리인에게 매매결과를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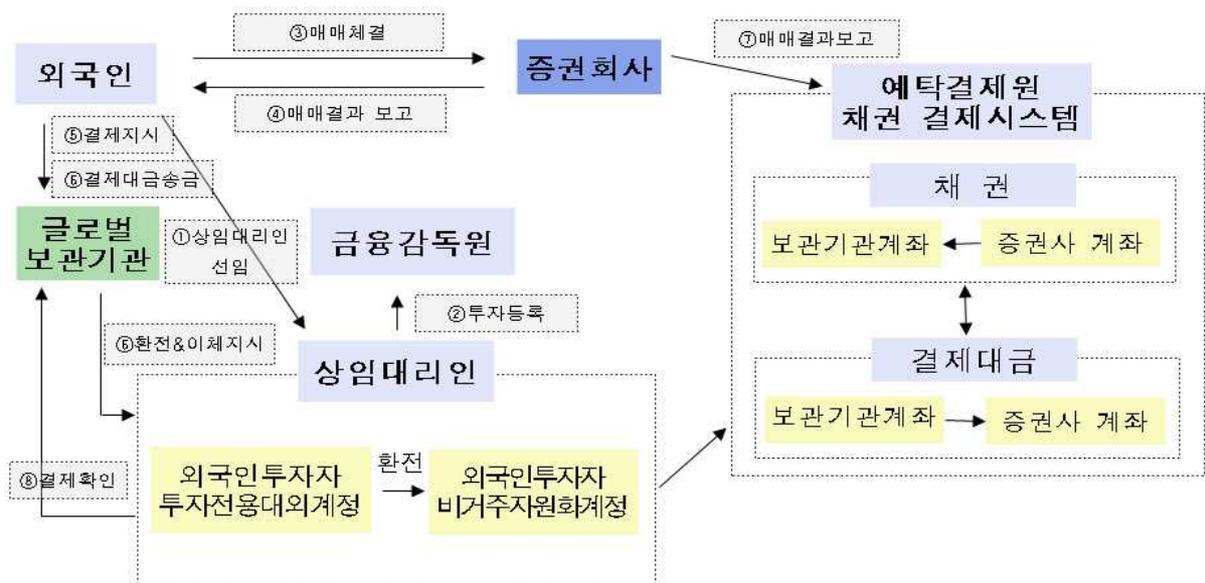
## C. 결제

외국인이 국내보관기관에 외화결제자금을 입금하면 국내보관기관은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거래증권회사와 결제처리를 한다.

장외시장의 경우에는 거래건별 총액결제 방식에 의해 DVP(Delivery versus Payment)로 결제하는데, 자금은 BOK-Wire나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체하고, 채권은 예탁결제원의 SAFE 시스템을 통하여 계좌간 대체방식으로 결제한다.

결제가 완료되면 보관기관은 결제내역서를 해외투자자에게 송부한다.

<그림 3> 외국인의 채권투자 절차



### 3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

외국인투자자<sup>89)</sup>는 국내원화증권<sup>90)</sup>에 투자(증권매각대금의 외국으로 송금을 포함한다)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sup>91)</sup> 및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이하 "투자전용계정"이라 한다)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처분할 수 있다.<sup>92)</sup>

#### A. 외국인이 본인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내원화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①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 외화자금을 송금하고, ②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이체한 후, ③그 원화를 투자중개업자에 개설한 본인 명의 매매거래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증권을 매매한다.

#### B. 외국인이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의 원화증권 취득·처분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를 위해 외국환은행에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이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89) 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란 비거주자(국민인 경우에는 해외영주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 또는 증권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를 말한다.

90) 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에 따라 동 규정 제3관(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내원화증권은 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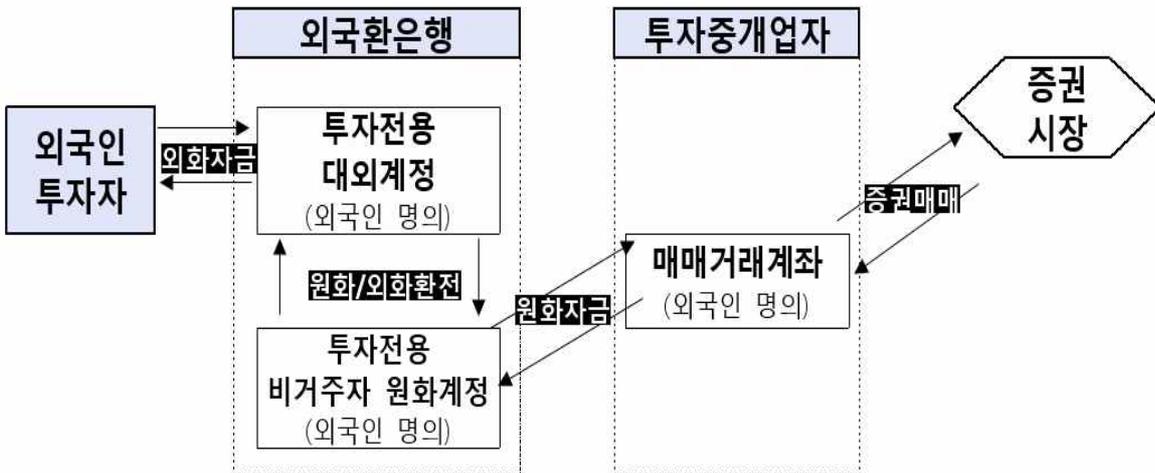
91)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5호에 따르면 "인정된 거래"란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하며,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제1항제16호 및 제7-48조제1항제6호에서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차입·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외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자가 대여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동일인당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비거주자간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자본시장법시행령상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증권을 차입·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92)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1항 본문

하는 경우에는 ①외국인이 외화자금을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 송금하면, ②투자중개업자가 이를 환전하여 투자중개업자에 개설한 그 외국인 명의 매매거래 계좌로 이체한다.

<그림 4> 외국인이 본인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는 경우



<그림 5> 외국인이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 4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취득 관련 신고

### A. 신고 면제

비거주자<sup>93)</sup>가 거주자<sup>94)</sup>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sup>95)</sup>

1. 외국환거래규정 제3관(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외화담보를 예치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3관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국내법령에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5.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sup>96)</sup>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지분 포함)을 비거주자가 당해 거주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6.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 제2-5조,<sup>97)</sup> 제2-10조<sup>98)</sup> 및 제7-22조<sup>99)</sup>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취득하거나 부여된 권리 행사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9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9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95)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제1항

9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를 포함한다),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가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97) 외국환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1년 초과외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는 경우

98) 외국환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역외계정예의 예치목적으로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외화증권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1년 초과외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99) 거주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등을 한 후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모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국민인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자본거래)제5절(증권의 발행)제2관(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 발행절차)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한 비거주자가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바에 따라 만기전 상환 등을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같은 규정 제7장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비거주자가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되는 해외판매채권을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한 국내 인수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만,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비거주자가 당해 주식예탁증서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10. 비거주자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절차 등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자본거래)제6절(증권의 취득)제3관(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제1호<sup>100)</sup> 및 제12호,<sup>101)</sup> 제7-31조제2항<sup>102)</sup>의 규정에 의해 증권을 취득한 거주자로부터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B.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

100)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자본거래)제6절(증권의 취득)제2관(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01)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11호, 제7-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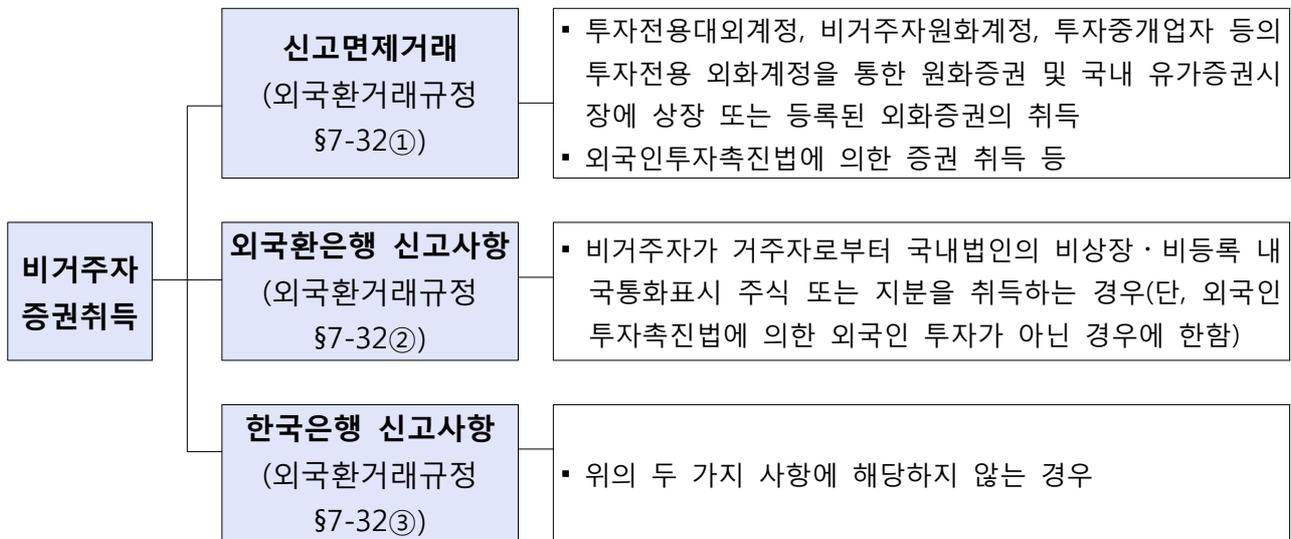
102)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후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sup>103)</sup>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up>104)</sup>

### C. 한국은행 신고사항

위 신고면제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up>105)</sup>

<그림 6>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취득 관련 신고



103)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에 해당된다.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4)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제2항

105)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제3항

**1 자본시장법**

**제168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① 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 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취득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제한에 추가하여 그 공공적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그 밖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7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도초과분의 처분, 취득한도의 계산기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종목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1인 취득한도: 해당 공공적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한도
2. 종목별 외국인 및 외국법인등의 전체 취득한도: 해당 종목의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40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득한도 제한 외에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업종별, 종류별 또는 종목별·품목별 취득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은 해외

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을 발행한 국내법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 (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이하 "투자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등록의 요건·방법·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할 것  
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3 금융투자업규정

#### 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제6-1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법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2.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 있는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

3. “직접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식투자”란 외국인이 직접투자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발행주식 또는 그 주식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예탁증권을 말한다.
6. “유통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7. “해외증권”이란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주식예탁증권, 유통주식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8.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9. “투자자집단”이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다수 외국인(외국법인등에 한한다)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그 외국인들을 말한다.
10.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이란 상장증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주)코스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1. “주식워런트증권”이란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6-2조(취득한도 등)**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1. 직접투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해외예탁기관이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
4. 내국민대우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주식매수선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상속, 증여, 유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외국법인이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0.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외국인은 취득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취득한도가 소진된 종목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외국인 1인 취득한도를 초과한 외국인은 초과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초과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제6-3조(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관련 취득한도의 관리등)** ① 외국인은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이하 “주식옵션등”이라 한다)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권리행사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한도초과분을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주식옵션등 권리행사 배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같다)까지 처분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제외한다)의 장 종료 10분전까지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 종료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가하는 방법 등으로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별로 처분하여야 할 종목별 수량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당해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은 주식시장의 최소 매매단위수량 미만을 절사한다.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 = 외국인별 당해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③ 제2항의 산식에서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에 공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소수점 이하 6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 【외국인 전체 그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그 종목의 투자한도 여유 수량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산정한 수량으로서 그날 주식옵션등의 권리행사 또는 권리행사배정으로 인한 주식수량 증감분 제외】 ÷ 외국인 전체 그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량

④ 외국인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에 제3항에 따른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전자증권중개회사를 통하여 그 종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외국인은 주식옵션등의 풋옵션 권리행사 또는 콜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주식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 영 제1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 다음날까지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외

국민은 한도초과분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한도초과분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주식옵션등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6-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관련 취득한도의 관리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바스켓 납입을 통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신청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세부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예탁결제원은 이를 취합하여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한도초과분을 환매일(주식바스켓 수령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별로 처분하여야 할 종목별 수량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그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은 주식시장의 최소 매매단위수량 미만을 절사한다.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 = 외국인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④ 제3항의 산식에서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산식으로 종목별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공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소수점 이하 6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시 현물로 납입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그 종목의 투자한도 여유 수량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환매청구일 다음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및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량]】 ÷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의 취득한도초과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청구시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6-5조(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계산기준)** ① 제6-2조·제6-3조·제6-4조 및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매수는 호가시점에서 취득한 것으로, 매도는 체결시점에서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인간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경우에는 체결시점에서 취득 및 처분한 것으로 본다.

2.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모두 합산하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제외한다.
  3. 발행주식총수 및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수의 계산은 당해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금 납입으로 인하여 납입일에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납입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나의 발행인이 발행한 권리내용이 다른 주식은 각각 하나의 종목으로 본다.
  5. 주식옵션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주식 옵션 권리행사일(주식옵션 권리행사 배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시 취득한 것으로 보며, 풋옵션 권리행사 또는 콜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인도할 주식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 익일(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같다) 장종료시 처분한 것으로 본다.
  6.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신청을 위하여 현물로 납입하는 주식은 설정일에 처분한 것으로 보며, 환매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은 환매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영 제1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1인의 종목별 주식취득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대한민국 내에 설치한 지점은 제외한다)은 합하여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법인의 외국소재 자회사 또는 현지법인은 별도로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3. 제6-12조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신청한 자는 별도로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제6-6조(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확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증권의 매수주문을 받은 때에는 제6-2조 및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한도를 초과한 때에는 당해 주문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영 제18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투자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2. 제6-2조제1항제5호에서 제9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취득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
4. 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에 따른 주식의 취득 및 처분
5.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의 매매거래
6. 영 제1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공공적법인의 지분증권의 외국인간 매매거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간에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 가.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지위에서 취득한 주식
  - 나. 제6-2조제3항에 따른 취득한도 초과분의 매도
7. 주식예탁증권 또는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원주 취득

8.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모집·매출되는 원주의 취득
9. 외국 증권시장에 복수 상장된 상장증권의 외국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및 처분(외국예탁기관의 집중예탁·인출을 포함한다)
10. 조건부매매
11. 투자매매업자를 매매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상장채권의 매매거래
12. 상장수익증권의 매매거래
13.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대차거래. 다만,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가 적용되는 종목은 외국인간의 대차거래에 한한다.
14. 전자증권중개회사를 통한 증권 매매거래
1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환매로 인한 처분 및 취득
16.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 방식의 증권 매매거래
17.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증권 취득
18.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이하 “국제예탁결제기구”라 한다)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제6-10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투자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에 한한다)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
19.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상호간의 공정가격에 의한 증권 매매거래
20.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영 제18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대표투자자 명의로 계좌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이를 매매 다음날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분대상 외국인은 투자운용자가 매매거래 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
  -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에 체결된 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투자운용자와 당해 투자자집단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배정단가를 정하여 체결된 주식을 배분할 수 있다.
  -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그 주문·체결·배분내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8조(증권시장 외에서의 양수·양도의 신고)** ① 외국인이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권시장 외에서 상장증권을 양수·양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6-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제13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당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위탁결제원 또는 증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6-7조제1항제2호(제6-2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관리 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3. 제6-7조제1항제1호, 제2호(제6-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7호, 제8호, 제16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예탁증권, 유통주식예탁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4. 제6-7조제1항제2호(제6-2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외국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 및 국내에서 취득한 증권을 외국증권시장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외국예탁기관을 포함한다)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증권이 반입·반출되어 위탁결제원에 예탁되거나 위탁결제원으로부터 인출된 경우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3>
- ② 외국인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1. 외국인이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감자, 주식의 병합 등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 외국인이 모집·매출하는 주식을 청약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관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 영 제187조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이미 발행된 주식예탁증권(유통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중 원주로 전환된 수량내에서 유통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

우를 말한다.

**제6-10조(투자등록신청 등)**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2.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② 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예탁결제원에 예탁자계좌를 개설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고 동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에서 동 기구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의 채권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한 외국인이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경우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이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투자등록의 방법·절차, 투자자집단의 신고 및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외국인 채권거래내역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11조(외국인투자등록증의 발급)** ①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외국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투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등록부에 투자등록의 주요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이 제1항의 투자등록증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거나 투자등록신청서 중 인적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서 또는 구투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투자등록증의 재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12조(투자등록의 특례)** ① 제6-10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투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자산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3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1. 국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영업소 및 일본투자자의유

가증권자금등송금관련통첩(국금41271-235) 제1호에서 규정한 일본에 소재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주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외국 금융기관등이 투자자산을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제6-7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일괄매매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 ② 해외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원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외예탁기관의 자기자산 투자를 위한 투자등록과 별도로 예탁증권의 원주별로 투자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명의로는 당해 해외예탁기관명 외에 예탁증권의 종류 및 원주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이 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종목별로 투자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명의로는 당해 외국예탁기관명 이외에 증권의 종목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6-13조(투자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6-10조에 따라 투자등록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투자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4. 이중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자
- ②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투자등록 이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규정,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외국인이 투자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6-14조(계좌의 개설)** ①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제6-11조제1항에 따른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2호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6-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본점에 1개의 해외증권관련주식 매도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6-15조(다계좌의 개설)** ① 투자등록한 외국인은 투자자산의 구분관리를 위하여 투자계정별로 매매거래계좌(이하 “다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다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은 당해 다계좌의 개설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16조(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외국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1. 매매거래계좌의 종류에 따른 증권(주가지수선물·옵션투자의 경우에는 매도를 포함한다)
2. 취득증권과 관련한 청약대금·제세액 및 수수료의 지급
3.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자기명의 또는 지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외국통화 매입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자기명의의 다른 매매거래계좌로의 이체

**제6-17조(예비주문 대상종목)** ①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예비주문대상종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비주문(증권시장의 호가접수시간 전에 행하는 외국인의 매수주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할 수 있다.

1. 한도소진종목 중 다음날 취득가능주식수가 100,000주 또는 취득가능금액이 30억원 이상 신규로 발생하는 종목
2. 그 밖에 외국인의 매수주문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② 금융감독원장은 예비주문 시행 전일에 예비주문대상종목 및 주문접수시간을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다.

**제6-18조(예비주문의 처리)** 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예비주문 내역을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고 주문가능수량을 배정받아 당해 주문(이하 “본주문”이라 한다)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문가능수량의 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가의 매수가격은 저가의 매수가격에 우선한다.
2. 가격이 동일한 때에는 계좌별 주문수량에 안분비례하여 신규취득가능주식 잔량을

배정한다.

③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예비주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19조(예비주문의 제한)** ① 외국인 1인은 예비주문대상종목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종목 신규취득가능주식수의 10% 이내에서 1건으로 예비주문을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본 주문 후 증권시장 개시 전에 주문가격의 상향조정 이외의 주문의 취소 또는 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0조(신용공여의 제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외국인에게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 중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제6-21조(증권의 보관등)** ①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증권 및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발행된 채권은 제외한다)을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이하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중인 증권(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외국인의 본국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외국인이 유상증자 등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청약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대리인 또는 거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① 외국인은 영 제188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라 제6-21조제1항의 보관기관 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의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23조(외국인 투자정보의 공시)**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의 증권매매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 가. 종목별 외국인 1인의 취득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
  - 나.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가능 주식 수
  - 다. 한도소진종목
  - 라. 한도소진종목의 외국인간 거래가격 및 거래량
  - 마. 제6-3조제3항의 종목별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2.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정보

**제6-24조(자료의 요구 등)**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상임대리인·예탁결제원·해외예탁기관·보관기관·금융기관 및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외국인의 증권 매매거래, 그 밖에 투자내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5조(위반시의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인이 제6-2조에 위반하여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당해 증권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장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투자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6-26조(적용특례)** ① 내국민대우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6-2조·제6-7조·제6-10조·제6-14조부터 제6-16조까지 및 제6-20조부터 제6-22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직접투자에 대하여는 이 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한다.

③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 중 해외에서 판매되는 채권(당해 외국법인등이 매입소각을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된 원화표시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10조·제6-14조·제6-15조 및 제6-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외국환평형형기금채권에 대하여는 제6-7조, 제6-10조·제6-14조·제6-15조 및 제6-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7조(보고사항 등)** 제6-24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요구, 그 밖에 외국인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4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 제5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제5-1조 (국제예탁결제기구)** ①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란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예탁결제기구는 규정 제6-10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투자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의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내역(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거래내역을 포함한다)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예탁결제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이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본인의 계좌에 이전하거나 취득한 증권을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처분하기 위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이전시키는 경우 및 국제예탁결제기구간 증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 (투자등록신청 등)** ① 규정 제6-1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등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법인설립증명서류 등 공적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6-10조제4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투자운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보고 등)** 규정 제6-27조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은 본인의 상장증권 매매거래내역(주식옵션의 권리행사 및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처분내역을 포함한다) 및 계좌개설내역(주식옵션의 주식결제용 계좌개설내역을 포함한다)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2. 금융기관(규정 제6-1조제8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금융기관에서의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종류별 매매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업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3. 보관기관(규정 제6-21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다만, 예탁결제원, 외국보관기관 및 규정 제6-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에 증권을 보관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그 보유내역을 직접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법인 및 타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은 그 법인의 외국인 주식취득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취득내역(소유 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역)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것
  - 가. 증권시장에서의 매각으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위탁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할 것
  - 나. 증권시장 밖에서의 양수·양도(신규 직접투자,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포함한다)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할 것
  - 다.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직접투자현황을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할 것
6.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법인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 변경시에도 이와 같다.
7.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 다만, 규정 제6-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외예탁기관은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잔고를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탁계약 또는 보관계약을 체결·갱신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
9.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을 당해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

**제5-4조 (장외거래 등)** ①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권시장 외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인은 당해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결제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2. 외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영 제176조의13제1항이 정하는 사채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사채를 말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원의 인가·결정·명령, 정부의 지도·권고·승인 등에 근거한 증권의 취득 또는

## 처분

② 외국인간 증권의 장외 이전으로서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권을 양수하는 외국인은 상임대리인을 거쳐 다음의 서류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이전이 이루어진 국가의 감독기관 또는 양수인이속한 국가의 회계사, 변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

## 증권시장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증권시장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

### 1. 주식 양수·도

가. 양수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 고유번호 :
- 성명 또는 상호 :
- 국적 :

나. 양도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 고유번호 :
- 성명 또는 상호 :
- 국적 :

다. 양수 또는 양도

구분	양수(양도)일자	종목명	종목번호	수량(주)	양수(양도)가액(원)	양수(양도)방법	비 고

#### 기재상의 주의

- 1) 구분은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며, 양수(양도)방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각 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중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 2) 해외증권관련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해외증권의 실제 매입비용(취득에 따른 조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외)으로 할 것.
- 3) 해외증권관련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당해 해외증권 취득일자, 해외증권관련주식의 상장(등록)예정일 등을 기재할 것.
- 4) 당해 거래가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 5) 해외예탁기관이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취득에 대한 원주발행회사의 동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첨부할 것. 다만, 당해 동의사실이 기재출된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함.
- 6)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상호간에 증권의 장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에 대한 증빙서류(매매사유, 매매내역, 공정가격 등)를 첨부할 것.

위와 같이 증권시장 외에서 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하였기에 「금융투자업규정」 제6-8조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대리인)또는  
투자중개업자

인(외국인인 경우에  
날인 또는 서명)

### 2. 상장채권 양수·도

가. 양수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 고유번호 :
- 성명 또는 상호 :
- 국적 :

나. 양도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 고유번호 :
- 성명 또는 상호 :
- 국적 :

다. 양수 또는 양도 내역

구분	양수 또는 양도일자	종목명	종목번호	권면총액 (천원)	양수(양도) 가액(원)	양수(양도) 방법	비 고

기재상의 주의

- 1) 구분은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 2) 종목번호는 한국거래소 상장종목인 경우 동 종목번호(KR코드)를 기재.
- 3) 양수(양도)가액은 상장채권의 실제매입비용(취득에 따른 조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외)으로 할 것.
- 4) 양수(양도)방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각 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 5-4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중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기재할 것.
- 5) 비고란에는 상장(예정)일, 투자중개업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 6) 당해 거래가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 7) 동일인이 운영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상호간에 증권의 장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당 해 매매에 대한 증빙서류(매매사유, 매매내역, 공정가격 등)를 첨부할 것.

위와 같이 증권시장 외에서 상장채권을 양수 또는 양도하였기에 「금융투자업규정」 제6-8조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대리인)또는  
투자중개업자

인(외국인인 경우에  
날인 또는 서명)

## 국내 및 외국증권시장간 증권 반입·반출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국내 및 외국증권시장간 증권 반입·반출 신고서

1. 증권을 반입(반출)하는 자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고유번호(투자등록번호) :

○성명 또는 상호 :

○국적 :

2. 반입 또는 반출

(단위 : 원)

매매거래소	반입 또는 반출일자	종목 (종목번호)	수량	입고 또는 출고 예정 금융기관	취득금액	비고

**기재상의 주의**

- 1) 반입은 외국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의미하며, 반출은 국내에서 취득한 증권을 외국증권시장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국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의미
- 2) 종목번호는 KR코드를 기재
- 3) 취득금액은 당해 증권의 실제 매입비용(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외)으로 하며 외화로 결제한 경우 당해국가의 화폐단위를 사용할 것
- 4)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위와 같이 증권을 반입 또는 반출하였기에  
「금융투자업규정」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인 (외국인인 경우에  
날인 또는 서명)





## 투자자집단 신고서

### 1. 대표투자자

투자등록번호	투 자 등 록 명	국 적	비 고

#### 기재상의 주의

대표투자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재하지 말 것

### 2. 관련투자자

투자등록번호	투 자 등 록 명	국 적	비 고

#### 기재상의 주의

관련투자자(대표투자자 포함)가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특별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비고란에 기재할 것

### 3. 투자운용자

투자운용자	국 적	투자등록여부	비 고

#### 기재상의 주의

1. 투자운용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2. 투자운용자가 투자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자집단을 신고합니다.

투자운용자 또는 대리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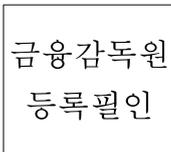
(CERTIFICATE OF INVESTMENT REGISTRATION)

- 성명 :  
NAME
  
- 생년월일(설립연월일) :  
DATE OF BIRTH(ESTABLISHMENT)
  
- 국적 :  
NATIONALITY
  
- 투자자분류 :  
TYPE
  
- 투자등록번호 :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상기인은 위와 같이 투자등록을 필하였음.  
THIS PERSON(FIRM) HAS BEEN DULY REGISTERED TO INVEST  
IN KOREAN SECURITIES HEREBY.

20 . . .

금 융 감 독 원 장



GOVERNOR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국제예탁결제기구의 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채권거래 내역 보고서

< 대상기간 > 20 . . . ~ 20 . . .

국제 예탁 결제 기구 명칭	적격 외국 금융 기관 명칭	거래자		채 권		거래내역						
		법인명 (성명)	국적	종목명	종목 번호	매매 구분	거래 일자	결제 일자	액면 금액 (원)	매매금액		국제장외 거래여부
										금액	통화	

**기재상의 주의**

- 1) 종목번호는 KR코드를 기재할 것.
- 2) 매매구분은 매수, 매도, 상환, 기타로 기재할 것.
- 3) <삭 제>
- 4) <삭 제>
- 5) 매매금액은 상장채권의 실제매입비용(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외)으로 하며 외화로 결제한 경우 당해국가의 화폐단위를 사용할 것.
- 6) 국제장외거래여부는 국제예탁결제기구내 계좌를 보유한 외국인간 국제예탁결제기구내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할 것.
- 7) 적격외국금융기관명칭은 「소득세법」 제119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의 명칭을 기재할 것.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상장채권 거래내역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인)**

작 성 자 :           ( 직 위 )
전화번호 :

##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매매거래 및 취득 증권 보관현황

1. 금융기관의 외국인 단기금융상품매매거래현황 보고

(단위 : 억원)

상 품 명	금융기관명	월말기준 전체매도잔액	월말기준 외국인에 대한 매도잔액	외국인에 대한 월중 단기금융상품 매도금액	외국인의 월중 상환등
기업어음(CP)					
계					
상업어음					
계					
무역어음					
계					
표지어음					
계					
차발어음					
계					
양도성예금증서(CD)					
계					
환매조건부매매(RP)					
계					
총 계					

- 주 1) 상환등은 만기상환, 금융기관이 외국인으로부터의 매수 등으로 외국인이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함  
 2) 매도금액 및 상환 등은 중개를 포함  
 3) 금융기관은 은행(체신관서 포함),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임

2. 증권 보관기관의 외국인 취득증권 보관현황 보고

가. 비상장주식

(단위 : 주,억원)

보관기관명	종 목	전월말 잔고	금월변동		금월말 잔고	액면금액
			보관	인출		
	소 계					
합 계						

주 1) 보관기관은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의 보관기관임

나. 비상장채권

(단위 : 만원)

보관기관명	종 목	전월말 잔고	금월변동		금월말 잔고	비 고
			보관	인출		
	소 계					
합 계						

주 1) 권면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다. 집합투자증권

(단위 : 백만좌, %)

보관기관명	종 목	전월말 잔고	금월변동		금월말 잔고	비 고
			취득	환매		
	소 계					
	소 계					
합 계						

라. 기타 증권 보관현황 (출자증권, 외국법인발행증권 등)

(단위 : 만원)

보관기관명	종 목	전월말 잔고	금월변동		금월말 잔고	비 고
			보관	인출		
	소 계					
	소 계					
합 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 신고인 (인)

또는 대리인

작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 신규상장 및 합병에 따른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보고

문서번호

20 .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신규상장 및 합병에 따른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보고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발행자 개황

- 발행회사명 :
- 발행내역 :

구 분	주식의 종류	코드번호	발행주식수	주당 발행가액	상장·등록예정일

- 주 1) 구분란에는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합병으로 구분 기재
- 2) 주식의 종류란에는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 기재

2. 외국인 취득내역

주주구분	투자등록 번호	외국인명	주식 취득내역			비 고
			종류 (코드번호)	취득 주식수	취득가액	
명부주주						
실질주주						
직접투자한 외국투자가						
합 계						

- 주 1) 외국인별 취득내역은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상 외국인과 상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상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직접투자한 외국투자가를 별도로 분류하여 작성
- 2)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 동 기관으로 하여금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3) 실질주주중 취득주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에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의 취득분은 제외

3. 명의개서대행기관명(대행신고시) : (인)

위 신고인 (인)  
또는 대리인

작 성 자 :	( 직 위 )
전화번호 :	

##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투자 현황 및 변동상황 신고서

1. 직접투자 현황 신고(매년 정기보고서)

회사명 :

외국 투자가명	보 통 주		우 선 주		계	
	주식수	비 율	주식수	비 율	주식수	비 율
계						

2. 직접투자 변동상황 신고

외국 투자가명	변동전 취득주식수			변동 주식수	변동후 취득주식수			변동 사유등
	보통주	우선주	계		보통주	우선주	계	
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 신고인                      (인)  
또는 대리인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 외국인의 취득 증권 보관현황 보고( 분기)

1. 상장 및 협회등록주식

(단위 : 주)

보관기관	고유번호	국적	계좌명	계좌번호	종목명	보관	인출	잔 고		비고
								전분기말	금분기말	
					소계					
					소계					
합계										

주) 보관기관별 소계와 전체합계를 표시할 것

2. 상장채권

(단위 : 만원)

보관기관	고유번호	국적	계좌명	계좌번호	종목명	보관	인출	잔 고		비고
								전분기말	금분기말	
					소계					
					소계					
합계										

주 1) 보관, 인출, 잔고는 권면액을 표시할 것

2) 보관기관별 소계와 전체합계를 표시할 것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 신고인                      (인)  
또는 대리인

작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 상임대리인 계약체결 및 해지현황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상임대리인 계약체결 및 해지현황 보고

1. 분기중 계약체결 상황

계약상대방 인적사항				계약일자	비 고
고유번호	성 명	국 적	투자자형태		

2. 분기중 계약해지 상황

해지상대방 인적사항				해지일자	비 고
고유번호	성 명	국 적	투자자형태		

**기재상의 주의**

투자자형태는 개인,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투자회사, 국제기구, 연기금, 조합, 해외영주권자, 기타로 분류

3. 분기말 계약현황

미국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스위스	아일랜드	캐나다	룩셈부르크	기타	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 신고인                      (인)  
또는 대리인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 실질소유자가 동일한 외국인간 증권의 장외 이전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제 목 : 외국인간 증권의 장외 이전 신고서

가. 양도인/양수인(Transferor/Transferee)의 인적사항

양도인(Transferor)			양수인(Transferee)		
고유번호	성명 또는 상호	국적	고유번호	성명 또는 상호	국적

나. 실질적 소유자(Final beneficiary owner)의 인적사항

- 고유번호 :
- 성명 또는 상호 :
- 국적 :

다. 확인자

- 성명 또는 상호 :
- 거주 국가 :
- 확인 자격 :

라. 이전 사유

마. 이전 내역

이전 일자	종 목	종목번호	수 량	비 고

기재상의 주의

1. '라. 이전사유'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이유와 증권이전의 목적을 자세히 기재할 것.
2. '수량'에는 지분증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지분증권의 수를, 채무증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권면총액을 기재할 것.
3.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

위와 같이 증권시장 외에서 증권을 양수 또는 양도하였기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대리인)또는

인(외국인인 경우에  
날인 또는 서명)